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안내는 분양홈페이지(www.더샵오창프레스티지.kr)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건본주택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00-0337)을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약자 본인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1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은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본 주택의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해당 제한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85㎡ 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11.)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 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혼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쟁 시 가점제 산정에 있어 부양가족 판단의 한 경우로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흡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일지라도 견본주택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도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샵오창프레스티지.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당 아파트에만 해당)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포함]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가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시행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시공사가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자로부터 시공사 지위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등 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3.09.21(목) ~ 2023.09.22(금)	2023.09.25(월)	2023.09.26(화)	2023.10.06(금)	2023.10.07(토) ~ 2023.10.11(수)	2023.10.17(화) ~ 2023.10.19(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건본주택 (이전기관 제외)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충동 산143-1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31221(2023. 9. 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4-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6층, 지상49층 7개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아파트 4개동, 총 644세대
 [특별공급 228세대 : 이전기관(산업단지) 중사자 186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이전기관 (산업단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 영 주 택	2023000453	01	099.9398A	99A	99.9398	33.5084	133.4482	62.4760	195.9242	15.5498	46	13	2	1	16	30	1
		02	099.9972B	99B	99.9972	33.4650	133.4622	62.5119	195.9740	15.5587	46	13	2	1	16	30	1
		03	099.9101C	99C	99.9101	34.1133	134.0234	62.4574	196.4808	15.5452	92	27	4	2	33	59	2
		04	099.7797D	99D	99.7797	33.6823	133.4620	62.3759	195.8379	15.5249	46	13	2	1	16	30	1
		05	105.7683A	105A	105.7683	35.0570	140.8253	66.1196	206.9448	16.4567	46	13	2	1	16	30	1
		06	105.8350B	105B	105.8350	35.0066	140.8416	66.1613	207.0028	16.4670	46	13	2	1	16	30	1
		07	105.4725C	105C	105.4725	36.0130	141.4855	65.9347	207.4202	16.4106	46	13	2	1	16	30	1
		08	117.4470	117	117.4470	40.1695	157.6165	73.4204	231.0368	18.2738	92	27	4	2	33	59	2
		09	127.7478A	127A	127.7478	40.1706	167.9184	79.8598	247.7781	19.8765	92	27	4	2	33	59	2
		10	127.8267B	127B	127.8267	40.1398	167.9665	79.9091	247.8756	19.8888	92	27	4	2	33	59	2
합계											644	186	28	14	228	416	14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 ²)	099.9398A	099.9972B	099.9101C	099.7797D	105.7683A	105.8350B	105.4725C	117.4470	127.7478A	127.8267B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99A	99B	99C	99D	105A	105B	105C	117	127A	127B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물, 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4.04.15	2024.10.15	2025.05.15	2025.12.15	2026.06.15	2026.12.15		입주지정일
99A	40~48층	9	85,541,400	429,507,818	42,950,78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30~39층	10	84,315,000	423,350,000	42,33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0~29층	9	83,088,600	417,192,181	41,719,219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19층	10	81,862,200	411,034,363	41,103,437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7~9층	3	80,329,200	403,337,090	40,333,710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6층	1	78,642,900	394,870,090	39,487,01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5층	1	76,956,600	386,403,090	38,640,31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4층	1	75,423,600	378,705,818	37,870,582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3층	1	73,737,300	370,238,818	37,023,882	481,000,000	10,000,000	3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2층	1	72,051,000	361,771,818	36,177,182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99B	40~48층	9	85,541,400	429,507,818	42,950,78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30~39층	10	84,315,000	423,350,000	42,33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0~29층	9	83,088,600	417,192,181	41,719,219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19층	10	81,862,200	411,034,363	41,103,437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7~9층	3	80,329,200	403,337,090	40,333,710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6층	1	78,642,900	394,870,090	39,487,01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5층	1	76,956,600	386,403,090	38,640,31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4층	1	75,423,600	378,705,818	37,870,582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3층	1	73,737,300	370,238,818	37,023,882	481,000,000	10,000,000	3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2층	1	72,051,000	361,771,818	36,177,182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99C	40~48층	18	83,625,150	419,886,227	41,988,623	545,500,000	10,000,000	4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163,650,000
	30~39층	20	82,414,080	413,805,381	41,380,539	537,600,000	10,000,000	4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161,280,000
	20~29층	18	81,218,340	407,801,509	40,780,151	529,800,000	10,000,000	4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158,940,000
	10~19층	20	80,022,600	401,797,636	40,179,764	522,000,000	10,000,000	4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7~9층	6	78,412,950	393,715,500	39,371,550	511,500,000	10,000,000	4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153,450,000
	6층	2	76,818,630	385,710,336	38,571,034	501,100,000	10,000,000	4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50,110,000	150,330,000
	5층	2	75,224,310	377,705,172	37,770,518	490,700,000	10,000,000	3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49,070,000	147,210,000
	4층	2	73,614,660	369,623,036	36,962,304	480,200,000	10,000,000	3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48,020,000	144,060,000
	3층	2	72,020,340	361,617,872	36,161,788	469,800,000	10,000,000	3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140,940,000
2층	2	70,410,690	353,535,736	35,353,574	459,300,000	10,000,000	3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137,790,000	

99D	40~48층	9	85,541,400	429,507,818	42,950,78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30~39층	10	84,315,000	423,350,000	42,335,000	550,000,000	10,000,000	4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0~29층	9	83,088,600	417,192,181	41,719,219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19층	10	81,862,200	411,034,363	41,103,437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7~9층	3	80,329,200	403,337,090	40,333,710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6층	1	78,642,900	394,870,090	39,487,01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5층	1	76,956,600	386,403,090	38,640,310	502,000,000	10,000,000	4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4층	1	75,423,600	378,705,818	37,870,582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3층	1	73,737,300	370,238,818	37,023,882	481,000,000	10,000,000	3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2층	1	72,051,000	361,771,818	36,177,182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105A	40~48층	9	93,053,100	467,224,454	46,722,446	607,000,000	10,000,000	5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30~39층	10	91,826,700	461,066,636	46,106,664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20~29층	9	90,447,000	454,139,090	45,413,910	590,000,000	10,000,000	4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10~19층	10	89,067,300	447,211,545	44,721,155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7~9층	3	87,381,000	438,744,545	43,874,455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6층	1	85,541,400	429,507,818	42,950,78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5층	1	83,701,800	420,271,090	42,027,110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4층	1	82,015,500	411,804,090	41,180,41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3층	1	80,175,900	402,567,363	40,256,737	523,000,000	10,000,000	4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2층	1	78,336,300	393,330,636	39,333,064	511,000,000	10,000,000	4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105B	40~48층	9	93,053,100	467,224,454	46,722,446	607,000,000	10,000,000	5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30~39층	10	91,826,700	461,066,636	46,106,664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20~29층	9	90,447,000	454,139,090	45,413,910	590,000,000	10,000,000	4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177,000,000
	10~19층	10	89,067,300	447,211,545	44,721,155	581,000,000	10,000,000	4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7~9층	3	87,381,000	438,744,545	43,874,455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6층	1	85,541,400	429,507,818	42,950,782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5층	1	83,701,800	420,271,090	42,027,110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4층	1	82,015,500	411,804,090	41,180,41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3층	1	80,175,900	402,567,363	40,256,737	523,000,000	10,000,000	4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2층	1	78,489,600	394,100,363	39,410,037	512,000,000	10,000,000	4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105C	40~48층	9	92,531,880	464,607,381	46,460,739	603,600,000	10,000,000	5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181,080,000
	30~39층	10	91,198,170	457,910,754	45,791,076	594,900,000	10,000,000	4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178,470,000
	20~29층	9	89,864,460	451,214,127	45,121,413	586,200,000	10,000,000	4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175,860,000
	10~19층	10	88,546,080	444,594,472	44,459,448	577,600,000	10,000,000	4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173,280,000
	7~9층	3	86,767,800	435,665,636	43,566,564	566,000,000	10,000,000	4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6층	1	85,004,850	426,813,772	42,681,378	554,500,000	10,000,000	4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166,350,000
	5층	1	83,226,570	417,884,936	41,788,494	542,900,000	10,000,000	4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162,870,000
	4층	1	81,463,620	409,033,072	40,903,308	531,400,000	10,000,000	4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159,420,000
	3층	1	79,685,340	400,104,236	40,010,424	519,800,000	10,000,000	4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51,980,000	155,940,000
2층	1	77,922,390	391,252,372	39,125,238	508,300,000	10,000,000	4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152,490,000	

117	40~48층	18	100,840,740	506,326,600	50,632,660	657,800,000	10,000,000	5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197,340,000
	30~39층	20	99,384,390	499,014,190	49,901,420	648,300,000	10,000,000	5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194,490,000
	20~29층	18	97,943,370	491,778,754	49,177,876	638,900,000	10,000,000	53,890,000	63,890,000	63,890,000	63,890,000	63,890,000	63,890,000	63,890,000	191,670,000
	10~19층	20	96,487,020	484,466,345	48,446,635	629,400,000	10,000,000	5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188,820,000
	7~9층	6	94,570,770	474,844,754	47,484,476	616,900,000	10,000,000	5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185,070,000
	6층	2	92,639,190	465,146,190	46,514,620	604,300,000	10,000,000	5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181,290,000
	5층	2	90,707,610	455,447,627	45,544,763	591,700,000	10,000,000	4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177,510,000
	4층	2	88,776,030	445,749,063	44,574,907	579,100,000	10,000,000	47,910,000	57,910,000	57,910,000	57,910,000	57,910,000	57,910,000	57,910,000	173,730,000
	3층	2	86,844,450	436,050,500	43,605,050	566,500,000	10,000,000	4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169,950,000
2층	2	84,912,870	426,351,936	42,635,194	553,900,000	10,000,000	4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166,170,000	
127A	40~48층	18	114,361,800	574,216,545	57,421,655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30~39층	20	112,675,500	565,749,545	56,574,955	735,000,000	10,000,000	6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20,500,000
	20~29층	18	110,989,200	557,282,545	55,728,255	724,000,000	10,000,000	6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10~19층	20	109,456,200	549,585,272	54,958,528	714,000,000	10,000,000	6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7~9층	6	107,156,700	538,039,363	53,803,937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6층	2	105,010,500	527,263,181	52,726,319	685,000,000	10,000,000	5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5층	2	102,864,300	516,487,000	51,648,700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4층	2	100,718,100	505,710,818	50,571,082	657,000,000	10,000,000	5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3층	2	98,418,600	494,164,909	49,416,491	642,000,000	10,000,000	5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2층	2	96,272,400	483,388,727	48,338,873	628,000,000	10,000,000	5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127B	40~48층	18	114,361,800	574,216,545	57,421,655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30~39층	20	112,675,500	565,749,545	56,574,955	735,000,000	10,000,000	6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20,500,000
	20~29층	18	110,989,200	557,282,545	55,728,255	724,000,000	10,000,000	6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10~19층	20	109,456,200	549,585,272	54,958,528	714,000,000	10,000,000	6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7~9층	6	107,156,700	538,039,363	53,803,937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6층	2	105,010,500	527,263,181	52,726,319	685,000,000	10,000,000	5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5층	2	102,864,300	516,487,000	51,648,700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4층	2	100,718,100	505,710,818	50,571,082	657,000,000	10,000,000	5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3층	2	98,418,600	494,164,909	49,416,491	642,000,000	10,000,000	5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2층	2	96,272,400	483,388,727	48,338,873	628,000,000	10,000,000	5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의료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 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계약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옥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이후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배정물량보다 청약신청 접수 건수가 적을 시 미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서류접수 기간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1800-0337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99A	99B	99C	99D	105A	105B	105C	117	127A	127B	합계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13	13	27	13	13	13	13	27	27	27	18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2	4	2	2	2	2	4	4	4	2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2	1	1	1	1	2	2	2	14
합계	16	16	33	16	16	16	16	33	33	33	22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속한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 전까지 민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사업주체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신청을 완료하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 이전기관(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주시 內 무주택세대구성원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소유 대상에 포함됩니다.</p>

청약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p>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청약저축 : 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자 중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무주택세대주)</p> <p>② 청약부금/청약저축 : 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무주택세대주)</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무주택세대주)</p> <p>※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p> <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청주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p>※'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구분	청주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청주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1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세대 : 총 186세대
---	---------------------	----------------

■ 대상자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대상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주1)}가 속한 청주시(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주1)}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p>	
해당 산업단지 ^{주1)}	<p>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현도농공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p>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p>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p> <p>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p> <p>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p> <p>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p> <p>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p> <p>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

-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대상자 세부사항

- 상시근로자의 범위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의 범위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방과후 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연구기관의 범위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기관명<개정 2021.08.17.>
 -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기관명<개정 2020.05.19.>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2항의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복 청약 등 방지를 위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청약은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마감시작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세대 : 총 28세대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자
 - 2)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3)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자격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 및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태어나 입양자녀 포함)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영유아 자녀 포함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인 경우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없음	0	
세대구성 (3) *중복 선택 불가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 없음	0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봄)로서 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1년 미만	0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인터넷 청약 시 청약통장 정보 확인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며 직접 선택은 불가)
		10년 미만	0	
총계	100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로 인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청약신청 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
 - 2) 주민등록표등본상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3)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자
 - 4)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청약자격 유의사항**

-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공급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만 해당]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만 해당]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도 유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신청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미적용)

※직계존속(노부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제1항에 의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속한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 전까지 민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사업주체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신청을 완료하고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p>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2순위 청약신청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신청자격
1순위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p>※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p>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제1항)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청주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입주자선정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3.09.21.(목) ~ 2023.09.22.(금)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 불가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견본주택 청약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견본주택 접수 불가 •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산143-1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2023.09.25.(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9.26.(화) 09: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하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청주시에 거주 중인 신청자이며, 청주시 외 거주 신청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기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이전기관(산업단지) 중사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이전기관(산업단지) 중사자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중사자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이전기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0%를 '이전기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각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주택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단, 철거민 및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 또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예외)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예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주시 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세대구성원 한정)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p>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입주자 관련안내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주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 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V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0.06.(금)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3.10.07.(토) ~ 2023.10.11.(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 발송 시 상기 제출기간은 우편발송 기한임 • 제출장소 :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충동 산143-1) (우편번호 28353)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www.더샵오창프레스티지.kr)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또는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3.10.06.(금) ~ 2023.10.15(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 (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 (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3.10.0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건본주택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당일 건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인터넷신청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라도 건본주택 접수 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약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이전기관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사업주체 홈페이지(www.더샵오프레스티지.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1)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 서식2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건본주택 비치) (2) 산업단지 종사자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필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허가증(국·공립 유치원·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2. 법인 인감증명서(국·공립 유치원·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3. 제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주기업에만 해당) 4.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구기관에만 해당) 5.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만 해당)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9. 비자 사본(외국인만 해당)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유치원·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13. 재직 증명서(유치원·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위 첨부서류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서약서	본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제2호[별첨]서식 '서약서' (건본주택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험인서' 인정 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건본주택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신청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부적격 통보 받은 자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소명자료)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통서류 (추첨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유형별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입증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3.10.06.(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 예정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 일정 등)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건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일정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분양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별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제한, 고객의 요청, 개인별 휴대폰 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SMS, MMS의 전송 및 도달 또는 통화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적격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하여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빨라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의 잔여세대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의 잔여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정당 당첨의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 후 잔여 물량 포함)하며,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10.17.(화) ~ 2023.10.19.(목) [3일간]	·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산143-1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최초 계약시)	387201-01-178541	(주)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동·호수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주)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입금확인증(이체확인 캡처 등)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1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주)국민은행 387201-01-178541, (주)하나자산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영수증, 입금 확인증, 캡처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자금조달계획서 (분양대금+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의 합계금액이 6억원 이상인 동·호수 계약자에 한함)

	※당 아파트의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향후 별도 진행 예정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건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7일)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특별공급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턴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지, 부적격 사유 등)
- 서류심사 관련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 의무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예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개시일의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 전월의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대납)하고,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또한, 이자정산일 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이자정산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이자정산일 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에 보증 이용건을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99A	99B	99C	99D	105A	105B	105C	117	127A	127B
발코니 확장 공사비		23,500,000	23,500,000	23,900,000	24,000,000	26,000,000	26,000,000	28,000,000	29,400,000	29,900,000	29,900,000
계약금 (10%)	계약시	2,350,000	2,350,000	2,390,000	2,400,000	2,600,000	2,600,000	2,800,000	2,940,000	2,990,000	2,990,000
중도금 (10%)	2024.04.15	2,350,000	2,350,000	2,390,000	2,400,000	2,600,000	2,600,000	2,800,000	2,940,000	2,990,000	2,990,000
잔금 (80%)	입주지정일	18,800,000	18,800,000	19,120,000	19,200,000	20,800,000	20,800,000	22,400,000	23,520,000	23,920,000	23,92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침실1(안방)발코니 및 다용도실 제외)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거나 내포양,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87201-01-178554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확인증(이체확인 캡처 등)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주체가 계약자와 다르거나(타인명의 등)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별도계약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제조사
					계약시	2024.04.15	입주지정일	
99A, 99B, 105A, 105B	기본	3대	• 거실+주방+침실1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삼성전자 / LG전자
	전실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99C, 127A, 127B	기본	3대	• 거실+주방+침실1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전실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99D, 117	기본	3대	• 거실+주방+침실1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전실	5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105C	기본	3대	• 거실+주방+침실1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전실	6대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택형 및 평면에 따라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제공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십시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 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본(거실+주방+침실1) 설치를 선택한 세대는 작은방 및 단위실내 냉매배관 및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실별 실내기 설치 위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실을 선택한 99C, 127A, 127B 타입 중 프리미엄키친 옵션을 선택한 경우, 히든키친에 실내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대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9A, 99B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실을 선택하여도 히든키친 내 추가로 실내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분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실내기 용량은 옵션 판매사의 기준에 따르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및 마감재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4.15	입주지정일
프리미엄키친[A] (히든키친+다이닝라운지)	99A, 99B	• 히든키친: 기본 주방가구 상/하부장, 금속찬넬, 기본형 후드, 가스쿡탑, 세라믹 상판+벽,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700,000	1,470,000	1,470,000	11,760,000
		• 다이닝라운지: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식탁라인조명(팬던트형), 세라믹 상판, 인덕션, 장식장, 팬트리,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위 구성 중 히든키친 세라믹 상판+벽을 인조대리석(MMA)/국산타일(300x600)로 적용시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99C	• 히든키친: 기본 주방가구 상/하부장, 금속찬넬, 기본형 후드, 가스쿡탑, 세라믹 상판+벽, 1슬라이딩 도어	24,000,000	2,400,000	2,400,000	19,200,000
		• 다이닝라운지: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식탁라인조명(팬던트형), 세라믹 상판, 인덕션, 장식장, 팬트리,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주방 디자인월, 선반, 하부장,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위 구성 중 히든키친 세라믹 상판+벽을 인조대리석(MMA)/국산타일(300x600)로 적용시	19,000,000	1,900,000	1,900,000	15,200,000	
127A, 127B	• 히든키친: 기본 주방가구 상/하부장, 금속찬넬, 기본형 후드, 가스쿡탑, 세라믹 상판+벽, 1슬라이딩 도어	28,900,000	2,890,000	2,890,000	23,120,000	
	• 다이닝라운지: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식탁라인조명(팬던트형), 세라믹 상판, 인덕션, 장식장, 팬트리,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주방 디자인월,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위 구성 중 히든키친 세라믹 상판+벽을 인조대리석(MMA)/국산타일(300x600)로 적용시	22,300,000	2,230,000	2,230,000	17,840,000		
프리미엄키친[B] (대면형 주방)	99D	• 대면형 고급 주방가구, 세라믹 상판, 아일랜드 약세서리, 금속찬넬, 인덕션,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락판넬, 옵션 선택에 따른 거실 우물천장 변화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105C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105A, 105B	• 대면형 고급 주방가구, 세라믹 상판+벽, 금속찬넬, 인덕션, 전동형 상부장, 장식장,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주방 디자인월,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117	• 대면형 고급 주방가구, 세라믹 상판, 아일랜드 약세서리, 금속찬넬, 인덕션, 디자인후드,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락판넬, 장식장, 거실 후면 원형매입조명(3개소), 옵션 선택에 따른 거실 우물천장 변화, 알파공간을 활용한 거실 대형화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세라믹 타일	99A, 99B	• 기본형 주방 상판+벽 세라믹 타일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99C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99D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105A, 105B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105C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117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127A, 127B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바닥타일	99A, 99B	• 기본형 평면 거실+주방 포슬린타일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99C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99D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105A, 105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105C, 127A, 127B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117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99C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105A, 105B, 117 127A, 127B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2,850,000 3,400,000	285,000 340,000	285,000 340,000	2,280,000 2,720,000	
현관중문	99A, 99B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신발장 하부 조명 (별치 센서 포함)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99D, 105C, 117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105A, 105B, 127A, 127B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99C	• 여닫이 중문 + 신발장 하부 조명 (별치 센서 포함)	2,250,000	225,000	225,000	1,800,000	
디자인월	99A, 99B	• 대형타일 아트월(600*1200) + 아트월 간접조명 + 복도/거실 벽판넬 (상부 픽처레일 포함)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99C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99D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105A, 105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105C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117, 127A, 127B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침실1(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형	전타입	• 시스템 선반(조명) + 벽판넬(자원순환 친환경 패브릭) + 슬라이딩 도어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스탠다드형	전타입 (127A, 127B 제외)	• 침실1(안방)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127A, 127B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침실2 불박이장	전타입	•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침실3 불박이장	전타입	•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다용도실 선반	전타입	• 수납, 분리수거 등을 위한 약세서리 선반	760,000	76,000	76,000	608,000	
삼성비스포크 + 톨장	전타입	• 삼성비스포크(냉장/냉동/김치) + 톨장(인출형 서랍) - 냉장: RR40C7995AP(우) / RR40C7895AP(좌) - 냉동: RZ34C7965AP(우) / RZ34C7865AP(좌) - 김치: RQ34C7945AP(우) / RQ34C7845AP(좌)	7,150,000	715,000	715,000	5,720,000	

LG오브제 + 톨장	전타입	• LG오브제(냉장/냉동/김치) + 톨장(인출형 서랍) - 냉장: BC1L1AA1(STS) - 냉동: BC1F1AA(STS) - 김치: BC1K1AA1(STS)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스타일링바스 (공용욕실+부부욕실)	전타입 (105A, 105B 제외)	• 공용욕실: 건식 세면대, 상/하부 수납장, 벽체 락판넬, 포켓도어, 욕실 수납장, 국산타일 벽(300*600), 국산타일 바닥(300*300), 프리미엄 수전, 건식 세면공간 앞 바닥타일(600*600)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105A, 105B	• 부부욕실: 외산타일 벽(600*600), 외산타일 바닥(300*300), 프리미엄 수전/변기, 올리브 무광 샤워부스, 카운터탑 세면대(하부장), 욕실장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99A, 99B, 99C, 99D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및 침실1,2,3 감성조명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105A, 105B, 105C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117, 127A, 127B		3,150,000	315,000	315,000	2,520,000
	99D, 105C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117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전타입	• 13인치 월패드 + 안면인식 도어폰 + 지문인식 도어락 + 스마트 욕실 스위치	990,000	99,000	99,000	792,000
전동커튼	전타입	• 전동커튼 거실 + 침실1(안방) / 레일 설치 및 월패드 연동 (※커튼 미포함)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① 평면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세면대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천정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천정 점검구는 상부층 세대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점검 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공용욕실 락판넬, 바닥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약세사리 설치품목 및 위치,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감재(스타일링바스 바닥: 타일 / 케어룸 바닥: 강마루)가 변경됩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은 견본주택 117타입에 건립되어 있으나 각 타입별 평면 조건에 따라 스타일링바스 평면의 형태와 크기, 상/하부장 등 가구의 구성과 형태, 크기 등이 건립 타입과 비교하여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유상옵션 선택시 스타일링바스(건식 세면공간)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케어룸은 기본제공 품목이며 케어룸 선택시 거울과 하부장이 설치되며 욕실과 케어룸 사이 도어는 ABS도어, 케어룸과 복도사이 도어는 목도어로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하니 계약 전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옵션 구성에 인덕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99A, 99B, 99C, 127A, 127B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히든키친에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포함되는 인덕션과는 별도 사항입니다.
- 프리미엄키친 미선택 시 주방가구 하부장은 목대찬넬로 시공됩니다.
- 히든키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주방후드 배기용 배기구 사이즈가 커지거나 배기구 수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부층 세대의 욕실관련 유무상옵션 선택에 따라 상부 세대 급배수배관 점검구가 욕실 천장 또는 욕실 주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입주자)는 점검 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이점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9D, 105A, 105B, 105C, 117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 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에서 가스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제품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옵션 추가금액은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선택 옵션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99D, 105C, 117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을 선택하시면 이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이 증가하지만 간접조명을 원하실 경우 루미나 옵션을 선택하셔야 거실+주방에 간접조명이 설치됩니다.
- 99A, 99B, 99C, 105A, 105B, 127A, 127B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우물천정과 간접조명이 설치되며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입니다.
- 117 타입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침실1(안방)에 팬트리가 시공되며, 기본형 주방의 경우 알파공간에 팬트리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구 및 마감재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라믹 타일은 시공상 이음매 노출이 발생되며,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음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에서 세라믹 타일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을 선택하지 않거나, 프리미엄키친의 주방 또는 히든키친에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을 선택한 경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각 해당 옵션 구성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벽/바닥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 바닥타일 선택 시, 타일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타일의 적용 범위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거실/주방 바닥타일 자재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다이닝장식장(주방 장식장)의 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전면에 설치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은 소형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으로 대형 제품(벽걸이TV 등) 전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개별 구매 필요)의 허용 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몸체 1개소[길이 0.75~1.25m] 기준으로, 와이어 2개 이하(와이어당 허용 하중 7kg 이내)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99A, 99B 타입은 기본형 평면에서 디자인월 선택 시 팬트리 도어가 디자인월과 같은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99C, 127A, 127B 타입은 프리미엄키친과 디자인월을 복수 선택 시 팬트리 도어가 디자인월과 같은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117 타입은 디자인월 선택 시 팬트리 도어가 디자인월과 같은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③ 빌트인 냉장고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비스포크, 오브제)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엘지전자 오브제 선택시 컬러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주택형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비스포크/오브제 :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전동커튼

- 전동커튼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 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0kg 미만의 커튼지 하중을 허용)

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장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거실 감성조명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실, 복도 등에 설치된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입니다.
- 99D, 105C, 117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주방우물천정 및 간접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정이 주방으로 확장되어 설치됩니다. 간접조명을 원할 시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⑥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13인치 월패드, 환기 연동되는 스마트 욕실 스위치, 지문인식 푸시풀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10인치 월패드, 기구식 욕실 스위치, 푸시풀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13인치 월패드에서 제공되는 추가 콘텐츠 서비스는 신규서비스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전제품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4.15	입주지정일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DW60T7075F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 DUB22SB2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전기오븐	전타입	[삼성] NQ36A6555CK	400,000	40,000	40,000	320,000	
		[LG] MZ385EBT	450,000	45,000	45,000	360,000	
인덕션	전타입	[삼성] NZ63B5056AK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 BEI3GTBI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청정환기시스템	스탠다드형	전 타입 (117, 127A, 127B 제외)	[경동나비엔]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117, 127A, 127B	• 청정환기유닛 + 통합컨트롤러 1EA + 공기질센서(이동형) 1EA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프리미엄형	99A, 99B	[경동나비엔] • 청정환기유닛 + 통합컨트롤러 1EA + 거실 외 각 실별 공기질 센서 일체형 컨트롤러(고정형) + 전동디퓨저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99C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99D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105A, 105B		5,650,000	565,000	565,000	4,520,000
		105C		5,950,000	595,000	595,000	4,760,000
		117		6,650,000	665,000	665,000	5,320,000
127A, 127B	6,350,000	635,000		635,000	5,080,000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대우컴프레서] DC50DAW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욕실 복합환풍기	전타입	[힘펠] FHD3-C150P *2개소 설치(공용욕실+부부욕실)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음식물 분쇄처리기	전타입	[지비엔디테크놀로지] GB-200	750,000	75,000	75,000	600,000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청정환기시스템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스탠다드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제어 실별로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주방에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통합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 선택 시 99C 타입의 침실4, 105A/B 타입의 알파룸, 127A/B 타입의 침실4에는 청정환기 각실 컨트롤러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혹은 인근 침실에 연동하여 작동됩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음압 환기 모드시 별도의 배기팬이 작동되고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일반 환기디퓨저 대신 전동디퓨저가 설치되며 설정된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힐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은 기본형 환기장치 대비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 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 건축 옵션에 따라 천장의 구조변경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천정의 환기디퓨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음식물 분쇄처리기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와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제품 설치 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배출구의 배출 고무는 성능유지 차원에서 연 1회 교환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욕실복합환풍기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환풍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전원 구성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드레스룸제습기

- 드레스룸제습기는 해당 옵션 선택 시 침실1(안방)의 드레스룸에만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제습기 설치 위치에 따라 드레스룸 천장의 등 천장 설비의 위치 및 제품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제습기의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제조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제습기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인덕션 및 전기오븐

- 기본형 세대에서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인덕션이 유상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오븐 선택 시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되며, 미선택시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유상옵션 선택 구성에 따라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되는 전기오븐 위치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식기세척기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기타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택형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004-532535	(주)포스코이앤씨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대금 오납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확인증(이체확인 캡처 등)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공사비의 납부주체가 계약자와 상이(타인명의 등)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계약 미체결), 중도금 미납(연체)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주)하나자산신탁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공사는 (주)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인 (주)포스코이앤씨와 별도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

(1)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문	• 목재문(문틀, 문선,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세대 PL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도어록
	바닥	•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수트 및 벽패널류 등),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 포함) 벽 도장	• 콘크리트 벽체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또는 초벌미장 마감, 배선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천정	•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몰딩), 거실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텐박스 / *천정 설치공간만 해당
	욕실	•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재료분리대, 샤워부스, 욕실약세사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뒷선반	• 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배선기구류 (스위치 및 콘센트)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인조대리석 상판 포함) 일체,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등 주방가전 일체	• 설비배관,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자동식소화기(자재만 제공), 가스차단기,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일체, 욕실매입 등	• 매입등(현관등, 복도등)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현관창고(기본 해당 세대에 한함), 드레스룸(드레스룸 도어, 파우더장 포함), 복도장(기본 해당 세대에 한함), 수전	• 각종 슬리브, 월패드, 에어컨냉매배관, 소화기

(2)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99A	99B	99C	99D	105A	105B	105C	117	127A	127B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금액)	17,160,000	17,160,000	16,830,000	16,280,000	17,710,000	17,710,000	16,500,000	17,160,000	18,040,000	18,590,000

(3)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으로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태로 상이하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을 변경하실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태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각종 설비배관은 옵션 미선택 세대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 관련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기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후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VIII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입주자 사전방문은 실입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사전방문안내문 발송 ⇒ ②입주자 현장 도착 ⇒ ③접수, 교육 안내 ⇒ ④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점검표 제출 ⇒ ⑥입주 전 보수 완료 ⇒ ⑦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시 상태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차로 부분) : 지하1층 2.7M 이하 / 지하2~지하6층 2.3M 이하**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IX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 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p>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광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청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관청인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p>인·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에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의 공동주택(아파트)은 2022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상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공공녹지, 기반시설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로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심사(23.7.31) 결과에 따라 주동 1층 바닥 및 주동 코아 최하부 구조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이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분양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팸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1층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지붕, 계단실, 분리수거장, 조경 및 설비시설물, 문주 등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는 99C, 117 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 99C, 117 타입 외 건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99A, 99B, 99D, 105A, 105B, 105C, 127A, 127B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주택형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당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도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전시품목 안내 및 유의사항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본주택 내 침실1(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침실1(안방) 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침실1(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 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단위세대는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대지의 주변현황, 필요전기, 설비기기,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형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경관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입지환경 (학교, 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동측 근린공원의 산책로 등으로 일부세대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 및 차폐시설 등을 요구할 수

	<p>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인접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 구간이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이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 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 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 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주 교육지원청 협의에 따라 당 아파트의 학생배치 계획은 2028년 이후 초등학교는 '청원초등학교', 중학생은 '5학교군'으로 배치 가능하나, 학생배치 여력 부족으로 '청원초' 배치가 어려울 경우 인근 학교(양초 등)에 분산 배치될 수 있습니다. [준공(입주) 1년 전 확정·배치] ※학생배치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반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해 단지 내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단지 및 주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외선방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은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 102, 103, 104동 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체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 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탐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 거리가 상이

- 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 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 간섭 등의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 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 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 시설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해충 및 미생물의 발생, 개구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물놀이터, 수경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라운지, 수경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티하우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조경 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지 바닥감, 창호 형태, 난간 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 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 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차)의 통행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5g입니다.
- 계단실에 면한 창은 환기를 위해 5개층 마다 환기 가능 창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주상복합의 동 표기는 설계도서를 준용하여 아파트는 101~104동, 오피스텔은 105~106동으로 표기됩니다.
-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의료시설 9층 옥상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인원 통행으로 인근 세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3동 후면, 104동 전면에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예정 위치를 견본주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 물놀이터는 102동 전면에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예정 위치를 견본주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 물놀이터 수심은 30cm 이하 운영기준의 물놀이 시설이며,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운영 및 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어린이 물놀이터는 준공 후 사용자 관리주체가 안전요원을 선임,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물놀이터를 포함하여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의 안전, 보건, 수질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의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103동 측벽1면은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는 석재 및 금속 마감과 경관조명이 계획되어 있으나, 분양 모형에 표현된 마감으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측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는 석재 및 도장 마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분양 모형에 표현된 마감으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 각동 지상23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주거복합시설로서 주차장은 지하 6개층으로 구성되며, 용도별로 별도 계획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중심상업2로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 지하2층~지하6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지하6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동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우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장애인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차 충전전용구역 등의 위치 등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입주(입점)자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협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 중 경비실, 소방시설 중 방재실 등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간 공유가 가능하나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 및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1개의 통합방재실 내에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통신장비들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골프연습장 및 헬스시설이 설치되어 인접동 및 같은동 상/하부세대 등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비상시 일반인의 주민대표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세대 평면, 가구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99A, 99B, 99D, 105A, 105B, 105C 타입은 건립세대인 99C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127A, 127B 타입은 건립세대인 117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5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사전인정제도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 주민공동시설 상부세대를 포함하여 설치되며 최하층에는 승강식 피난기가 설치됩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수 있습니다.
- 23층 피난안전층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비상시 22층 세대로 이동가능하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주택형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또는 병렬 설치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의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 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체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타일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타일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타일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 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 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가 설치되는 도어에는 전면접이식 손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유상읍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구분 및 마감을 위한 칸막이 벽체의 재료는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전면 발코니 난간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주택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면 돌출 및 층수 변화에 따라 상부세대와 인접세대의 단열재 시공이 상이하여 내부 마감재 사이즈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내 피트 및 배관공간은 변경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 선택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포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실 외측 방충망 설치로 인한 시야간섭 및 작동에 위한 손잡이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창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및 심의 조치에 따라 비상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이용되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및 형태, 하부에 설치될 수 있는 발판 및 발판의 형식은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관계법령에 따라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내에서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에 단열 및 결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거실은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침실1(안방) 발코니 외부창호는 '분할형 창호'가 설치됩니다. 이의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 외부창호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형태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의 형태가 상이하나,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의 형태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 기계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탑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방법 및 방재 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 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축격뢰,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축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102동, 103동, 104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1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101동~104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동 옥상에는 소화용 저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인접 호실은 소음, 진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세대 기계전기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 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람에 이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체물도 없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 및 환기 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의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옵션에 따른 추가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옵션 선택시 냉매매립배관 및 연결용 매립박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자동식소화가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수 드레인, 선출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침실 내부(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으로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가스를 열원으로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9D, 105C, 117 타입 세대는 보일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세대는 다용도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대피공간에는 3층~10층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규격 및 재질 등은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별난방 가스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환기장치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 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침실 내부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쿠팡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침실1(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에는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일반 가구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되며, 카카오, SKT, 삼성전자, KT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카카오 i 연동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이앤씨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희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헤이카카오, 카카오희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희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희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 카카오희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입니다.
- 삼성전자 연동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 연동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사업주체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대별 LG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 IoT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SKT연동
 - SKT NUGU Smart Home NUGU 및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하여 세대 기기제어 및 세대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민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p>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T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KT 기가지니 홈IoT, 기가지니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사들과 논의/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KT 기가지니 홈 IoT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KT 기가지니 홈 IoT,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환경은 KT 기가지니 홈페이지(https://gigagenie.kt.com/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구글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구글홈,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제공되는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조명제어 등)의 제공기간 및 비용은 구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글 음성인식 스피커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구글 정책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음악,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등의 콘텐츠는 구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능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구글입니다. • LG U+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LG 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사들과 논의/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LG U+의 정책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LG U+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금 주체는 LG U+입니다) - LG U+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환경은 LG U+ 홈페이지(https://www.uplus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공되는 카투홈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사들과 논의/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정책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금 주체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입니다) -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카투홈 서비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블루링크/기아 커넥트 앱 사용자가 보유하신 자동차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블루링크/기아 커넥트에 가입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	---

IX 기타사항

-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적용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지침)
- 목적 : 이 지침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상기 적용범위에 의한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①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②청각장애인, ③시각장애인, ④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적용합니다.

구분	시설 내용		제공 대상
현관	마루 굽틀 경사로	•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욕실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추후 물넘침 등의 부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고령자 • 지체장애인
	미끄럼방지 타일	•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일반세대에 적용하는 바닥타일 마찰계수 이상의 제품을 적용)	
	출입문 규격확대	• 출입구의 폭 80cm이상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개폐방향 변경	•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 → 밖여닫이) *도어스토퍼 미시공	

	좌식샤워시설	• 욕조 제거후 샤워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2개, -자형 1개)	
주방	좌식 주방 싱크대	•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올버림대)를 설치 ※음식물처리기 유상옵선(추가선택품목) 선택 불가 ※온수분배기 위치 이동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 주방가구를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지체장애인
	가스밸브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 지체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	• 세대 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야간 센서등	• 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지체장애인
주동·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주동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 현관 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향후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전매 시에도 상기 사항이 같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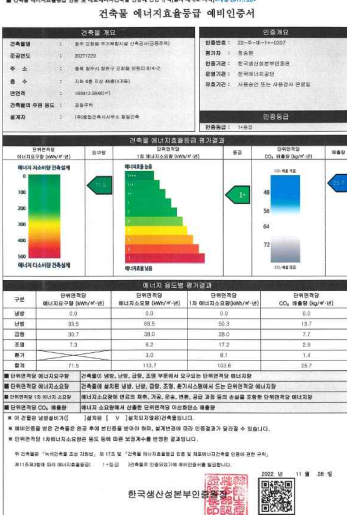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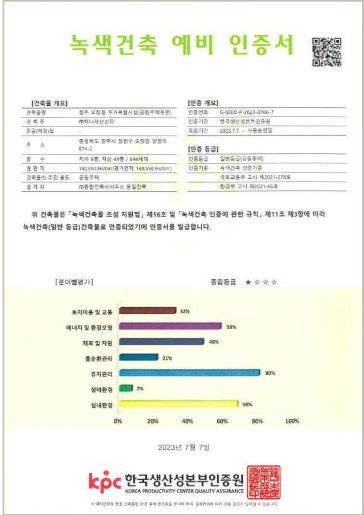
※입주민의 편의상 타 세대와 달리 시공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하자 및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등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3-101-0004900 호	275,951,69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약관

<p>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증도금을 되돌려 줌</p> <p>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구조감리
회사명	(주)토펙엔지니어링	(주)더베스티앤씨	(주)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일방엔지니어링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금액	5,365,359,890	1,000,739,177	410,000,000	1,059,968,228	60,000,000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관리형토지신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리드산업개발(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리드산업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리드산업개발(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리드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리드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리드산업개발(주)와 시공사인 (주)포스코이앤씨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포스코이앤씨	리드산업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안뎡로25번길 14, 2층 (분평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4611-0002979	150111-0055637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2 style="margin: 0;">총 644세대</h2>	<h2 style="margin: 0;">분양문의 1800-0337</h2>
<p style="text-align: center;">99m²A·B·C·D / 105m²A·B·C / 117m² / 127m²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홈페이지 : www.더샵오창프레스티지.kr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산143-1